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-8호

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(모빌리티)

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「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월 12일

인천광역시장, (재)인천테크노파크원장

1 프로젝트 개요

○ **(프로젝트명)** 모빌리티 신(新)기술전환 지원

○ **(프로젝트 기간)** '24년~'26년(3년)

○ **(프로젝트 내용)**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인천지역 특화분야 기업 집중 육성

분야	주요내용
모빌리티	인천의 주력산업 중, 글로벌 경쟁력 선점이 시급한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택·집중하여,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빌리티 선도기업 육성

2 참여기업 선정

○ **(지원자격)** 인천광역시 소재 지역중소기업으로서,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 기업 대상

※ 본사, 지사, 공장 중 1개 이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 지원 가능

* 다만, 신청기업의 수요가 **'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(스마트공장)'**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가능

○ **(선정규모)** 약 56개사 내외

○ (선정기준) 참여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비고
공통지표 (80점)	프로젝트 부합성	· 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	10	비계량
		· 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	10	
	참여(지원) 필요성	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	10	
		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	10	
	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	· 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	10	
		· 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	15	
	신청기업의 역량	· 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(대표자/책임자, 주생산품/보유기술, 재무상태 등)	15	
지역 자율지표 (20점)	신청기업의 성장성	·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 증가율	5	계량
		·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고용 증가율	5	
	지역내 파급효과	· 신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파급효과 (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 기대효과)	10	비계량
배점 합계			100	-

○ (평가방법)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

- 선정평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함

$$\text{선정평가 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- 선정대상 기업은 선정평가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, 총점 60점미만은 선정제외

○ (지원내용) '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**'프로젝트 지원사업(참여기업 전용)'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** 부여

- 「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확인서」 발급 ※해당 확인증 소유 시, 우대사항 적용

구 분	지원분야(5개)		우대사항
지원내용	컨 설 팅	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	❶ 평가 절차 간소화 : 현장평가 면제 *일반절차: 서류평가→현장평가 ❷ 지원 요건 완화 : 매출액 기준 적용 예외 *일반요건: 제조업+매출액 (평균120억원 이하 소기업)
	수출지원	② 수출바우처	-
	정책자금	③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	기술성 평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*(일반)29개→(우대)15개
	창업성장	④ 창업중심대학	평가 절차 간소화: 서류평가 면제 *일반절차: 서류평가→발표평가
	제조혁신	⑤ 스마트공장	

< 2024년 인천광역시「모빌리티 新 기술전환 지원」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>

구 분	지원분야	지원사업명	2024년 지원규모(안)
중소벤처기업부	컨 설 팅	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	5.44억원
	수출지원	② 수출바우처	2.38억원
	정책자금	③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	75.6억원
	창업성장	④ 창업중심대학	0.72억원
	제조혁신	⑤ 스마트공장	14억원
	소 계		*약 98.14억원*
합 계			*약 98.14억원*

3 유의사항

○ **(중복참여 불가)**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+』참여기업 선정계획에 **중복으로 참여 불가***

*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**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**되거나, 또는 선정 이후라도 **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**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
○ **(신청자격 요건)**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구 분		신청자격 요건
공통	1	· **「지역중소기업법」** 상의 **지역중소기업** (중소기업[1]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[2]) 1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)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	2	· **사업장소재지**가 신청 프로젝트 **해당 시·도에 소재**하는 기업
개별	3	· **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**하는 기업 **(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)** * 시·도별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참조(프로젝트별 대상, 업종·산업군 등 상이)
	4	· 그 외 **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**하는 기업 **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**

※ 개별 신청자격 요건은 [별첨1]참조

○ **(신청제외 대상)**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구 분		신청제외 대상
공통	1	· 휴·폐업 중인 기업
	2	·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	3	· 한국신용정보원의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	4	·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 등)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	5	· 임직원의 횡령·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,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(제3자 부당개입 등)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
개별	6*	· 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**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**
	7*	· 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**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**

※ 개별 신청제외 대상은 [별첨2]참조

○ **(기타)*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4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: 2024. 1. 16.(화) 14:00, 로봇타워 3층 세미나실

* 주소 : 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로 155-11, 로봇타워 3층 세미나실

○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참여기업 모집공고		참여기업 신청·접수		참여기업 심사/선정		참여기업 선정확정		지원사업 합동공고		지원기업 심사/선정		프로젝트 지원
공고 게시	▶	온라인 신청 (BizOK)	▶	사전검토/ 선정평가	▶	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	▶	중기부 사업(공동)	▶	사업별 심사·선정	▶	사업별 지원
1.12(금)		1.25(수)~ 1.31(수)		~2.23(금)		2.28(수)		3월		4월		4월~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**(공고기간)** 2024. 1. 12(금) ~ 1. 31(수)

- 인천테크노파크(ITP뉴스-지원사업) 및 비즈OK홈페이지 공고 게시

* 인천테크노파크(https://itp.or.kr/), 비즈OK(https://bizok.incheon.go.kr/)

○ **(접수기간)** 2024. 1. 25(목) ~ 1. 31(수) 18:00 까지

○ **(신청방법)** 온라인 신청(홈페이지) → 신청서류 제출(업로드)

- **(신청·접수처)** https://bizok.incheon.go.kr/

※ 온라인(비즈OK 홈페이지)을 통한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

※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불인정하며,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권장

* **비즈OK 홈페이지(로그인) → 기업지원 →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→「지역특화 프로젝트」레전드 50+ 참여기업 모집공고 → 기업지원사업 신청**

- **(신청서 서식 참고)**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양식 참조

※ [붙임3] 기업별 제출 서류(취합) 참고

구분	제출서류	서식 여부	비고
1	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⁺』신청기업 자가진단표	서식1	필수
2	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⁺』참여기업 신청서	서식2	필수
3	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⁺』참여기업 수행계획서	서식3	필수
4	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	서식4	필수
5	기업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	서식5	필수
6	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서식6	필수
7	사업자등록증	-	필수
8	공장등록증 ※ [사업5]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은 필수제출	-	해당시
9	매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*('20~'22)표준재무제표(결산확정), ('23)회계법인,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기준	-	필수
10	수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*('20~'22)수출실적증명서(직접)기준, 수출액 및 수출업력	-	필수
11	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*('20~'22)고용보험가입자명단가입자수(대표자제외) ※ 고용보험가입자명단 검색기간은 연도별 12월 31일 하루 기준(3개년제출) **(예시)검색기간: 2022년 12월 31일~2022년 12월 31일(1일)**	-	필수
12	모빌리티 관련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(자유제출)	-	필수

6 관련법규 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○ **(지원근거)**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
○ **(관련규정)** 지역특화 프로젝트『레전드 50⁺』관리지침

7 문의처

○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

구분	담당기관(부서)		연락처
참여기업 모집공고	총괄	인천광역시 (산업정책과)	032-440-4207
프로젝트 관리	주관기관	(재)인천테크노파크 (로봇센터)	032-727-5011, 5020
시스템 문의		(재)인천테크노파크 (BizOK 시스템담당)	070-8787-8286

별첨1	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개별요건>

사업명	내역명	(개별 4)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공통요건은「별지 제5호」참조>
중소기업 혁신바우처	일반 바우처	· **(신청자격)**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**<참고 1>**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**<참고 2>** 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
중소기업 정책자금 (융자)	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	· **(신청자격)**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*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내에서 운용
수출 바우처	내수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전년도 수출액 0~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* 추가사항 :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
	수출 초보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
	수출 유망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
	수출 성장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
	수출 강소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창업중심 대학	초기 창업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(기업) **<참고 3>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**
	도약기 창업기업	· **(신청자격)**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,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(기업) **<참고 3>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**
스마트 공장	고도화1	· **(신청자격)**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* 중간1 :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
	고도화1 (동일수준)	· **(신청자격)**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기업(1회 한함)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
지역특화 산업육성	지역주력 산업육성 (기업지원)	· **(신청자격)**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

별첨2	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개별요건>

사업구분	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「별지 제5호」참조>
중소기업 혁신바우처	•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•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•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•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•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기업 (예외 : '23년 1차,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) •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• 대표자/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(개별 6)
중소기업 정책자금 (융자)	•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<참고 4>을 영위하는 기업 •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 (예외 : ①제조업, 혁신성장·초격차·신산업,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, ② 사회적경제기업[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] 중 소상공인, ③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) •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•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<참고 5>을 초과하는 기업 - 예외① : 업력 7년 미만,「소득세법」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- 예외② :「중소기업협동조합」상의 협동조합 - 예외③ :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1.5% 이상인 기업의 R&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) •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- 대상① :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- 대상② :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.0 미만,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(-)인 기업(예외: 유형자산, R&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.5% 이상 증가) - 대상③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예외: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) •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- 예외① :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- 예외② :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추가 1회에 한함) - 예외③ :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, 재도약지원/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- 예외④ : 투융자심의위원회/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,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•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- 대상① :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,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(예외 :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) - 대상②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(예외: 업력 3년 미만 기업, 최근

<table>
<tr><th>사업구분</th><th>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「별지 제5호」참조></th></tr>
<tr><td></td><td>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,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 협동조합,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
- 대상③ :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(예외: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잡수출 50만불 이상, 20% 이상 증가)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)

•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
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융자방식)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기, 투융자복합금융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- 예외② : (과거실적 산정예외)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
- 예외③ : (신규지원 예외대상) 소재·부품/장비 강소기업 100・스타트업100・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

•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예외① : (자금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
- 예외② : (융자방식)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
•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용도, 융자방식, 대상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, 창업기반지원자금(대환대출), 시설자금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,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브랜드K 인증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- 예외② : (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</td></tr>
<tr><td>수출
바우처</td><td>•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• 중기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
•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-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
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
•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

•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<table>
<tr><th>업종분류</th><th>품목코드</th><th>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조업</td><td>33402中</td><td>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</td></tr>
<tr><td>33409中</td><td>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도매 및 소매업</td><td>46102中</td><td>담배 중개업</td></tr>
<tr><td>46331, 3 / 4722中</td><td>주류, 담배 도매업</td></tr>
<tr><td>숙박 및 음식점업</td><td>5621</td><td>주점업</td></tr>
<tr><td>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</td><td>5821中</td><td>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td></tr>
<tr><td>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</td><td>9124</td><td>갬블링 및 베팅업</td></tr>
</table>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•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</td></tr>
</table>

사업구분	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「별지 제5호」참조>
창업중심 대학	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, 영위하고자 하는 자 <참고 6> • 사업연도가 '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, 중도포기자) 포함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**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 •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 *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제1항,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 • 창업중심대학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•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•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 •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스마트 공장	• 과제 신청일 기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 중인 기업 •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•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
지역특화 산업육성	•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 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참고1	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2. 운수 및 창고업	H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
43. 임대업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30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3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- 창업여부 기준표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3">상세 구분</th><th>창업 여부</th></tr>
<tr><td rowspan="10">개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</td><td colspan="2">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기존 개인사업자 유지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기존 개인사업자 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~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~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15">법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기존 개인사업자 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~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~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동종전환</td><td>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</td><td>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존 개인사업자 유지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동종창업</td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자회사 여부</td><td colspan="2">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과점주주 여부</td><td colspan="2">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회사형태 변경</td><td colspan="2">동종유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/tr>
</table>

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 및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.

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4 중소기업 정책자금 -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□ 융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융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매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

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

□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

○ 제조업 영위기업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
○ 혁신성장분야, 초격차·신산업분야, 그린분야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
○ 사회적경제기업 : 소상공인, 보건업(86) 영위기업 지원 허용

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
○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
* (추진주체)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(중소기업 협동화 기준)

○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: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

·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공급업(96913)

참고5 중소기업 정책자금 -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번호	업종(KSIC-10)	평균부채 비율(%)	제한부채 비율(%)	사업전환 융자
1	A01(농업)	178.0	500.0	1000.0
2	A03(어업)	252.9	500.0	1000.0
3	B(광업)	167.4	500.0	1000.0
4	C(제조업)	121.9	365.7	731.4
5	C10(식료품)	150.7	452.1	904.2
6	C11(음료)	136.3	408.9	817.8
7	C13(섬유제품(의복제외))	131.9	395.7	791.4
8	C14(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)	133.0	399.0	798.0
9	C15(가죽, 가방 및 신발)	121.5	364.5	729.0
10	C16(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 제외))	159.2	477.6	955.2
11	C17(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)	119.1	357.3	714.6
12	C18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	127.7	383.1	766.2
13	C19(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)	130.7	392.1	784.2
14	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)	98.5	295.5	591.0
15	C21(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)	69.3	207.9	415.8
16	C22(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)	120.3	360.9	721.8
17	C23(비금속 광물제품)	99.6	298.8	597.6
18	C24(1차 금속)	134.6	403.8	807.6
19	C25(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)	138.0	414.0	828.0
20	C26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)	102.1	306.3	612.6
21	C27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)	91.7	275.1	550.2
22	C28(전기장비)	108.3	324.9	649.8
23	C29(기타 기계 및 장비)	118.5	355.5	711.0
24	C30(자동차 및 트레일러)	161.6	484.8	969.6
25	C31(기타 운송장비)	313.7	500.0	1000.0
26	C32(가구)	164.8	494.4	988.8
27	C33(기타 제품 제조업)	120.2	360.3	721.2
28	C34(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)	165.2	495.6	991.2
29	D35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	520.1	500.0	1000.0
30	E(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)	120.9	362.7	725.4
31	F(건설업)	107.9	323.7	647.4
32	G(도매 및 소매업)	136.8	410.4	820.8
33	H(운수 및 창고업)	174.2	500.0	1000.0
34	I(숙박 및 음식점업)	381.0	500.0	1000.0
35	J(정보통신업)	119.6	358.8	717.6
36	L(부동산업)	445.1	500.0	1000.0
37	M(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	125.5	376.5	753.0
38	N(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)	203.6	500.0	1000.0
39	P(교육 서비스업)	163.4	490.2	980.4
40	R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)	224.2	500.0	1000.0
41	기타산업	194.5	500.0	1000.0

1)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
2)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%, 최대 500% 이내 (부채비율=부채총계/자본총계)
3)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('21년)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

참고6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- 지원제외 업종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구분	대상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